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5. 18.(목) 12:00 / 배포 2023. 5. 18.(목) 08:30
<5. 19.(금) 조간>

UBS - 크레디트스위스(CS) 기업결합 승인

- 양사 간 합병은 국내 금융투자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 없음 -
- 해외 발 금융시장 충격 최소화를 위해 신속 심사·승인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UBS Group AG(이하 'UBS')가 Credit Suisse Group AG(이하 'CS')를 **흡수합병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금융투자업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승인**하였다.

2023년 4월 6일 UBS는 CS를 합병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4월 25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하였다.

* 외국기업이라 하더라도 국내 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신고대상임

본 건은 스위스에 설립되어 전세계적으로 활동하는 **두 글로벌 투자은행 간 기업결합**이며, CS의 벤처투자 손실 및 신뢰 위기로 인한 파산위험이 **스위스 및 전세계 금융시장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스위스 정부의 지원* 하에 추진**되었다.

* 스위스 정부가 약 1천90억 스위스프랑(154조3천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UBS가 인수한 자산에서 발생할 잠재적 손실 중 약 90억 스위스프랑(12조7천억 원)에 대해 보증을 서기로 하면서 UBS와 CS 간 본 건 합병 거래가 성사

UBS의 한국 내 영업 중인 지점 또는 법인으로는 **UBS증권리미티드 서울지점** 및 **하나UBS자산운용***, CS의 경우 **CS증권 서울지점**, **CS 서울지점**이 있으며, 이들은 증권·파생상품 중개업, 기업금융업 등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다.

* UBS가 51%, 하나은행이 49%의 지분을 보유

< 관련 상품시장 및 영위 현황 >

영위 사업	내용	신고회사	상대회사	자본시장법·은행법상 인가 사항
①증권·파생상품 중개업 (Brokerage)	기관투자자 대상 위탁매매 수행	UBS증권	CS증권	투자중개업
기업금융업 (Investment Banking)	**②M&A자문**	UBS증권	CS증권	불필요
	③주식발행 주선(ECM)	-	CS증권	투자매매업[1」]
	④채권발행 주선(DCM)	UBS증권	CS증권	투자매매업[1」]
⑤자산운용업 (Asset Management)	펀드운용 및 운용수익 투자자 배분	하나UBS	CS증권	집합투자업
⑥금융상품투자업 (Principal Investment)	자기자본을 통한 직접투자	-	CS서울	투자매매업
⑦기업예대업 (Commercial Banking)	기업 고객 대상 예금·대출 등	-	CS서울	은행업

1」 주식발행(IPO, 유상증자) 주선(Equity Capital Market) 및 채권발행 주선(Debt Capital Market)은 증권사가 발행된 증권 중 청약되지 않은 물량을 자기자본으로 매입하여 추후 매각해야 하는 등으로 투자매매업 인가 필요

공정위는 본 건 심사와 관련하여 양사의 **세부 영위업종**에 대해 **서비스별 기능** 및 **상호 대체 가능성**, **자본시장법상 인가 분류 기준** 등을 고려하여, 관련 시장을 **①증권·파생상품 중개(Brokerage), ②M&A자문, ④채권발행 주선(DCM), ⑤자산운용 서비스 시장의 4개 시장으로 획정***하였다.

* ③주식발행 주선(ECM), ⑥금융상품투자업, ⑦기업예대업은 CS측만 영위하고 있어 시장획정 및 분석 불필요

또한, **지리적 시장**은 금융투자업 세부 업종별로 국가 및 지역에 따라 상이한 규제 체계가 존재하고 별도의 인허가 요건이 존재하는 점, 언어 장벽 및 투자 정보 수집·분석의 지리적 한계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4개 서비스 시장 모두 **국내 시장으로 획정**하였다.

본 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4개 세부 서비스 시장***에서 **각각 수평결합**이 발생하고, **①증권·파생상품 중개 시장과 ⑤자산운용 서비스 시장 간 수직결합****이 발생함에 따라 이들 결합 유형별로 경쟁 제한 우려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 ①증권·파생상품 중개업, ②M&A자문, ④채권발행 주선(DCM), ⑤자산운용업

** 자산운용사가 펀드 상품을 기획·구성하면 은행·증권사가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구조

심사 결과, 모든 결합유형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수평결합**이 이루어지는 4개 세부 서비스 시장 모두 **다수의 경쟁사업자**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결합 이후에도 UBS·CS의 **합산 점유율**이 낮아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도 **미미**하다고 보았다.

마찬가지로 증권·파생상품 중개 시장과 자산운용 서비스 시장 간 **수직결합**에서도 각 시장의 **시장집중도**가 낮고 결합회사의 상·하방 시장점유율이 낮아 경쟁사의 **구매선이나 판매선을 봉쇄할 능력이나 가능성** 등도 **미미**하다고 판단하였다.

< 시장별 점유율 및 집중도('22년 기준) >

서비스 시장	점유율 산정 기준	결합 전			결합 후		경쟁사업자 수 (개사)
		점유율(%)		HHI	합산 점유율(%)	HHI	
		UBS	CS				
증권·파생상품 중개	수수료	0.93	1.23	638.01	2.16	641.16	53
M&A자문	수수료	1.15	3.39	975.27	4.54	983.08	32
	거래금액	1.42	10.95	873.59	12.37	904.69	44
채권발행주선(DCM)[1」]	해외채 주관금액	5.54	1.97	681.64	7.51	703.47	27
자산운용	수수료	0.68	0.02	237.63	0.70	237.66	409

* 출처: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단, M&A자문(거래금액) 및 채권발행주선(해외채 주관금액)은 더벨 리그테이블

1」 당사회사 모두 국내 채권시장에서 채권발행 주선 실적은 없고, 국내기업 대상 해외채 발행 주선 업무만 하고 있어 보수적으로 국내기업 대상 해외채 발행 부문만으로 관련 시장을 좁혀서 당사회사의 점유율을 계산

< 허핀달-허쉬만지수(HHI) 및 안전지대 요건 >

◇ **수평결합(4건), 수직결합(1건) 모두** 기업결합 심사기준의 **허핀달-허쉬만지수(HHI)* 기준**으로 **경쟁제한성이 없는 안전지대**에 해당

* 시장 참여 기업 각각의 점유율의 제곱을 합한 값으로 그 **수치가 클수록 시장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

◇ **HHI 기준 상 안전지대 요건**

<수평결합>

가. HHI가 1,200에 미달하는 경우 (본건에 해당)

나. HHI가 1,200 이상이고 2,500미만이면서 HHI 증가분이 250미만인 경우

다. HHI가 2,500 이상이고 HHI 증가분이 150미만인 경우

<수직결합>

가. 상류·하류 시장 각각의 HHI가 2,500미만이고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25% 미만인 경우 (본건에 해당)

나. 관련 시장에서 당사회사 점유율이 각각 4위 이하인 경우 (본건에 해당)

본 건은 **해외 발 불안 요소가 국내 금융시장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신속히 심사승인***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총 22일 소요 (4.25. 신고, 5.17. 심사결과 통보 / 자료보정기간 제외 시 7일 소요)

** 현재 본 건에 대해 다수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가 진행 중(일부 국가 완료)

- 스위스: 피인수기업의 재무위기를 고려하여 현상동결 의무 면제(derogation)를 인정(주식 취득 가능)하였고, 현재 경쟁제한성 심사 중(사실상 사후심사)
- 미국, 캐나다, 일본, 브라질: 승인
- EU, 인도, 멕시코: 심사 중

향후에도 공정위는 **경쟁제한 우려**가 적거나 **조속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1: 금융투자업 개요 및 현황
붙임2: 세부 분야별 당사회사의 시장 점유율 ('22년 기준)
붙임3: 기업결합 당사회사 일반 현황 및 영위 사업 현황

담당 부서	기업거래결합심사국 국제기업결합과	책임자	과 장	임경환 (044-200-4633)
		담당자	사무관	예윤주 (044-200-463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1 금융투자업 개요 및 현황

□ **(개요)** 기업과 투자자 간 자금수요-공급을 연결함으로써 **"기업이 원하는 최적의 방법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비즈니스"**를 의미

□ **(분류)** 금융투자업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며, 크게 **증권·파생상품 중개업**(Brokerage), **기업금융업**(Investment Banking), **자산운용업**(Asset Management) 등으로 분류 가능

* **자기자본**으로 증권·파생상품 등에 **직접투자(Principal Investment)**하는 업무도 투자은행의 주요 업무이나, 본 건 결합과는 직접 관련성이 없어서 분석에서 **제외**

○ 현행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을 **경제적 실질***에 따라 **6개의 세부 업무**로 분류하여, 각기 **다른 규제·인가요건** 등을 규정

* 2006년 자본시장법 전면개정으로 금융투자업자 인가체계는 '금융기관별 인가'가 아닌 **'금융기능별 인가' 체계**(**동일한 금융기능**에 대해 **동일한 인가요건** 적용)

< 자본시장법 상 금융투자업 분류 >

분류	정의
투자매매업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청약·승낙을 하는 업
투자중개업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청약·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청약·승낙을 하는 업
집합투자업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을 투자대상자산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업
투자자문업	금융투자상품 등의 **가치 또는 투자판단에 관하여 자문**을 하는 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금융투자상품등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업
신탁업	위탁자로부터 **수탁**받은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는 업

□ **(증권·파생상품 중개업)** 투자자*를 대리하여 **증권·파생상품의 위탁매매** 등을 수행하는 업무 (부수적으로 개별 종목 및 투자시장 전반에 대한 분석 자료 등을 수집·제공) **⇒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

* 기관투자자·개인투자자 모두 증권·파생상품 중개 서비스의 수요자가 될 수 있으나, 당사회사의 국내법인은 모두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만 관련 서비스를 공급

□ (**기업금융업**) 기업이 **주식,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거나 **M&A**를 통해 **신사업 진출**(인수시) 또는 **자금 조달**(매각시)하는 것을 주선하는 업무
⇒ 자본시장법상「투자매매업」등에 해당*

* 주식, 채권 발행 주선 업무의 경우 발행되는 주식·채권 중 청약되지 않는 물량을 증권사가 **자기자본으로 매입**하여 **추후 매각**해야 하는 등으로 **투자매매업 인가가 필요**

○ (①**M&A자문**) **시장지배력 강화, 신산업 분야 진출 등의 목적에서 타 기업을 인수**하거나, **기존 사업·투자 Exit**을 위해 **기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 (②**주식발행 주선**(Equity Capital Markets, ECM)) **주식발행**(IPO, 유상증자)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자문 서비스** 제공 업무

○ (③**채권발행 주선**(Debt Capital Markets, DCM)) **채권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자문 서비스** 제공 업무

□ (**자산운용업**) **펀드**(2인 이상)**나 투자일임***(1인)의 형태로 위탁받은 **자금을 운용**하여 그 성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업무
⇒ 자본시장법상「집합투자업」또는「투자일임업」에 해당

* 자산운용사가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투자자 개별 계좌로 자산을 대신 운용

○ 일반적으로 **개인투자자**는 **판매사**(증권회사 등, Sell-Side)를 통해 **펀드에 가입**하여 **자산운용사**(Buy-side)에 자산을 위탁*

* **펀드의 기획·운용**(**자산운용사** – 집합투자업 인가 필요), **펀드의 판매**(**증권, 은행** 등 – 투자중개업 인가 필요), **고객 투자금의 보관**(**신탁사, 은행** 등 – 신탁업 인가 필요)으로 **3원화** 되어 있음. 특히, 고객 재산 보호를 위해 자산운용사는 계열회사가 아닌 **신탁업자**를 통해 고객 투자금을 보관해야 함

○ **기관투자자**는 **자산운용사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자금을 위탁

붙임2 세부 분야별 당사회사의 시장 점유율 ('22년 기준)

□ 증권·파생상품 중개 서비스 시장

<증권·파생상품 중개 서비스 시장 점유율>

연번	사업자명	수수료(백만원)	점유율(%)
1	키움증권(주)	649,870	12.97
2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509,105	10.16
3	삼성증권(주)	424,385	8.47
4	KB증권주식회사	414,016	8.27
5	NH투자증권	405,727	8.10
6	한국투자증권	334,098	6.67
7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309,846	6.19
8	대신증권주식회사	201,872	4.03
9	유안타증권주식회사	160,481	3.20
10	하나증권주식회사	156,876	3.13
(중 략)			
19	**CS증권 (상대회사)**	**61,653**	**1.23**
(중 략)			
24	**UBS증권 (신고회사)**	**46,418**	**0.93**
(후 략)			
소 계		**5,009,027**	**100.00**

*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FISIS)

□ M&A자문 서비스 시장*

* M&A자문 서비스 시장의 점유율은 **수수료 금액, 거래금액(M&A 주식 대금 등)**의 두 가지로 각각 산정 가능

<M&A자문 서비스 시장 점유율(수수료 기준)>

연번	사업자명	수수료(백만원)	점유율(%)
1	한국투자증권	322,272	22.30
2	메리츠증권(주)	203,836	14.11
3	KB증권주식회사	143,318	9.92
4	하나증권주식회사	85,671	5.93
5	부국증권주식회사	79,676	5.51
6	이베스트투자증권(주)	75,231	5.21
7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	68,123	4.71
8	키움증권(주)	56,969	3.94
9	**CS증권 (상대회사)**	**48,947**	**3.39**
(중 략)			
22	**UBS증권 (신고회사)**	**16,598**	**1.15**
(후 략)			
소 계		**1,444,935**	**100.00**

*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FISIS)

<M&A자문 서비스 시장 점유율(거래금액 기준)>

연번	사업자명	거래금액(백만원)	점유율(%)
1	삼일PwC	10,848,734	16.86
2	삼정KPMG	8,086,600	12.57
3	씨티글로벌마켓증권	7,910,250	12.30
4	**CS증권 (상대회사)**	**7,045,743**	**10.95**
5	골드만삭스	4,184,098	6.50
6	Moelis&Company	3,533,366	5.49
7	모간스탠리	2,962,500	4.60
8	JP모간	2,524,520	3.92
9	LionTree	2,284,800	3.55
10	딜로이트 안진	1,912,264	2.97
11	BDA파트너스	1,883,303	2.93
12	EY한영	1,687,858	2.62
13	삼성증권	1,100,446	1.71
14	신한투자증권	1,034,300	1.61
15	**UBS증권 (신고회사)**	**914,338**	**1.42**
(후략)			
소 계		**64,333,685**	**100.00**

* 출처: 더벨 리그테이블

□ 채권발행 주선(DCM) 서비스 시장*

* 당사회사들은 최근 **5년간 국내채권 발행 인수 실적이 없음**. 단, **외화 조달 목적**의 **해외채 발행 시장**에서의 **인수 실적이 일부 존재**하여 이를 기준으로 분석
또한, **수수료 금액(매출액 개념)**을 기준으로 한 점유율 정보는 파악되지 않아 **주관금액(채권발행 실적으로, 생산량 개념에 해당)을 기준**으로 점유율을 산정

<해외채 발행 주관 서비스 시장 점유율>

연번	사업자명	주관금액(달러)	점유율(%)
1	Citi	4,199,905,381	13.02
2	JP Morgan	2,863,439,405	8.87
3	BoA Merrill Lynch	2,752,938,095	8.53
4	HSBC	2,683,854,762	8.32
5	Credit Agricole	2,644,631,810	8.20
6	BNP Paribas	2,636,532,143	8.17
7	Standard Chartered	2,049,937,524	6.35
8	**UBS증권 (신고회사)**	**1,785,905,742**	**5.54**
(중 략)			
15	**CS증권 (상대회사)**	**636,926,190**	**1.97**
(후 략)			
소 계		**32,264,199,973**	**100.00**

* 출처: '22년 더벨 리그테이블

□ 자산운용 서비스 시장*

* 자산운용 서비스 시장의 점유율은 **펀드설정규모 또는 수수료(펀드 운용 및 자산관리로 수취한 수수료)**의 두 가지로 산정 가능

<자산운용 서비스 시장 점유율(펀드설정규모 기준)>

연번	사업자명	펀드설정규모(순자산총액)(일억원)	점유율(%)
1	삼성자산운용	2,769,293	19.10
2	미래에셋자산운용	1,451,891	10.02
3	케이비자산운용	1,250,845	8.63
4	신한자산운용	1,091,581	7.53
5	한화자산운용	996,282	6.87
6	엔에이치아문디자산운용	515,669	3.56
7	한국투자신탁운용	484,953	3.35
8	키움투자자산운용	459,118	3.17
9	흥국자산운용	415,823	2.87
10	교보악사자산운용	383,669	2.65
11	우리자산운용	307,106	2.12
12	**하나UBS (신고회사)**	**272,436**	**1.88**
(후 략)			
소 계		**14,496,606**	**100.00**

* 출처: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포털

** 펀드설정규모: 펀드, 투자일임의 순자산(AUM) 합계 기준

<자산운용 서비스 시장 점유율(수수료 기준)>

연번	사업자명	수수료(백만원)	점유율(%)
1	미래에셋자산운용	332,158	8.42%
2	삼성자산운용	250,605	6.36%
3	이지스자산운용주식회사	213,523	5.42%
4	KB자산운용	176,034	4.46%
5	한화자산운용	133,220	3.38%
6	한국투자신탁운용	126,910	3.22%
7	신한자산운용주식회사	118,071	2.99%
(중 략)			
30	**하나UBS (신고회사)**	**26,639**	**0.68%**
(중 략)			
297	**CS서울 (상대회사)**	**647**	**0.02%**
(후 략)			
소 계		**3,942,709**	**100.00%**

*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FISIS)

** 수수료: 집합투자증권 취급 수수료 + 자산관리(부동산투자회사, PFV의 자산관리 등) 수수료 + 집합투자기구 운용 보수 + 상대회사의 자산관리(PB) 수수료

*** 상대회사의 **자산관리 서비스(PB)**도 자산운용 서비스에 **포함된다는 가정** 하에 '시장 전체의 자산운용 서비스 수수료 현황'에 **'상대회사의 자산관리 수수료'**만을 포함하여 **시장 점유율을 산정**한 결과

붙임3 기업결합 당사회사 일반 현황 및 영위 사업 현황

□ 당사회사들의 일반 현황

구분	신고회사 (UBS Group AG)		상대회사 (Credit Suisse Group AG)	
사업내용	금융투자업		금융투자업	
재무상황	2022.12.31. (단위: 백만원)		2022.12.31. (단위: 백만원)	
자산총액 (기업집단) 매출액 (기업집단) 국내매출액 (기업집단)	85,560,492 (1,399,560,497) 8,298,195 (44,653,668) 0 **(81,393)**		137,081,070 (729,485,457) 4,611,843 (20,173,938) 0 **(287,987)**	
주주구성 (%)	주주	비율	주주	비율
	UBS Group's own shares Chase Nominees Ltd. London BlackRock Inc., New York Nortrust Nominees Ltd, London 기타	13.95 8.60 5.24 4.33 67.88	Saudi National Bank Qatar Holding LLC Others	9.88 5.03 85.09
	합계	100.00	합계	100.00

□ 신고회사 집단의 영위 사업 및 인가 현황

회사명	영위 사업	내용	자본시장법상 관련 인가·등록
UBS증권 리미티드 서울지점	증권·파생상품 중개업	기관투자자 대상 위탁매매 수행 (개인고객 제외)	투자중개업
	기업금융업	M&A자문	(불필요)
		채권발행 주선(DCM)	투자매매업
하나UBS 자산운용	자산운용업	펀드운용 및 운용수익 투자자(2인 이상) 배분	집합투자업

□ 상대회사 집단의 영위 사업 및 인가 현황

회사명	영위 사업	내용	자본시장법·은행법상 관련 인가·등록
CS증권 서울지점	증권·파생상품 중개업	기관투자자 대상 위탁매매 수행 (개인고객 제외)	투자중개업
	기업금융업	M&A자문	(불필요)
		주식발행 주선(ECM), 채권발행 주선(DCM)	투자매매업
	자산운용업	펀드운용 및 운용수익 투자자(2인 이상) 배분	집합투자업
CS 서울지점	금융상품투자업	자기자본을 통한 직접투자	투자매매업
	기업예대업	기업 고객 대상 예금·대출 등 서비스 제공	은행업